

7.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규칙중 개정령(안) 입법예고

재정경제부공고 제1998-83호 1998. 6. 12

주 요 골 자

- 가. 법인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경우 기준부채비율을 초과하는 부채비율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추징토록 되어 있는 바, 부채비율 계산시 적용되는 부채의 범위를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 총액으로 정함.
- 나. 부채비율 계산시 적용되는 자기 자본의 구체적 범위는 각 사업연도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으로 하며, 결손금의 발생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 자본으로, 자산 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평가 차액을 제외한 것으로 정함.
- 다. 세금우대저축의 중복가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금우대저축 가입시 가입자가 1인 1통장임을 확인하여 저축계약서 또는 신청서에 서명날인토록 하고, 중복통장임을 알게된 금융기관은 그 사실을 저축가입자 등에게 즉시 통보토록 함.
- 라. 농수축협, 신협, 마을금고 등의 예탁금·출자금 등이 저축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종전에는 그 전체금액에 대하여 세금 우대를 배제하던 것을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만 세금 우대 적용을 배제토록 정함.

개 정 이 유

조세감면규제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세금우대저축에 대한 중복통장문제 등 제도운용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주택회보